국가교육위원회 공고 제2025 - 8호

국가교육위원회 단시간 근로자(변호사) 채용 공고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에서 근무할 단시간 근로자(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3월 5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1. 선발개요

선발분야	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근무처(근무지)
단시간 근로자 (변호사)	1명	채용일로부터 1년	ㅇ 법제 및 송무 ㅇ 법령검토 및 행정지원	국가교육위원회 (정부서울청사)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가능

2. 근무조건

ㅇ **고용형태 :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등 적용)

ㅇ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간**(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ㅇ **근로시간 : 주 3일*, 1일 8시간**(09:00~18:00)

* 근무 요일 협의 가능

ㅇ **월 보수기준액 : 월 2,726,400원 수준***(세전)

* 기본급,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포함 금액, 4대 보험 의무가입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 기타 수당은 별도 지급

3. 응시자격요건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인 자

○ 남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2025.3.14.)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범위 이하인 경우 자격요건 적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단, 적격자가 5배수 이하일 경우 5배수 이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 예정 분야 경력기간 및 상훈실적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국가관 및 윤리관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시험일정

○ 시험공고 : 2025. 3. 5.(수) ~ 2025. 3. 14.(금)

○ 원서접수 : 2025. 3. 12.(수) ~ 2025. 3. 14.(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예정) : 2025. 3. 21.(금)

○ 면접시험일(예정) : 2025. 3. 25.(화)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개별통보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일(예정) : 2024. 3월 중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6.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가. 접수 기간 및 제출 방법

○ 접수 기간 : 2025. 3. 12.(수) ~ 2025. 3. 14.(금) 18:00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아래 이메일 주소에 수신된 접수분에 한하며 그 이후에 수신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 방법 : 이메일 접수(nsh1990a@korea.kr)

※ 전자우편 제목은 **"국가교육위원회 홍길동 응시원서"**로 작성,
각 제출서류는 작성 또는 발급 후 스캔하여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송부

○ 문의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발전총괄과 02-2100-3364

나. 제출서류(아래 순으로 정리·스캔하여 전자우편 첨부파일로 제출)

구분	제출서류
작성양식	①응시원서 ②이력서 ③자기소개서 ④직무수행계획서 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⑥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별지서식 제1~6)
증명서류	변호사자격증 사본(필수), 경력 증빙 서류(해당자), 직무분야 표창(상훈) 사본 주민등록초본(남성만 제출, 병역사항 기재) 등

○ **응시원서**(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서식 제2호) 1부

○ **자기소개서**(서식 제3호) 및 **직무수행계획서**(서식 제4호)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제5호) 1부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서식 제6호) 1부

○ **변호사자격증**(사본) 1부(필수), **경력증명서 1부, 표창(상훈) 사본 1부** 등 (해당자에 한함)

※ (경력) 발급 일자가 최근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하며, 재직기간, 업무 등 경력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만 제출, 병역사항 기재 필수)

7.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가.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증빙 서류 미비 및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의 경력 사항·상훈 등 **제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 **관계 기관**에 **사실확인** 등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응시원서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각종 조회를 통하여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3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나. 기타 참고사항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채용단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육발전총괄과**(02-2100-3364)로 문의 바랍니다.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응 시 분 야	단시간 근로자(변호사)

□ 제출목록

연 번	제출서류명	제출여부
1	응시원서(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별지서식 제1호)	
2	이력서(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별지서식 제2호)	
3	자기소개서(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별지서식 제3호)	
4	직무수행계획서(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별지서식 제4호)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별지서식 제5호)	
6	채용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별지서식 제6호)	
7	변호사자격증 사본(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8	경력(재직)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9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해당자에 한함)	
10	주민등록초본(남성만 제출, 병역사항 기재 필수)	

※ 내용을 제출한 항목은 제출여부란에 "○", 미제출한 항목은 "X" 표시

<별지서식 제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국가교육위원회 단시간근로자(변호사)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단시간근로자 (변호사)
성명	(한글) (한자)		
20 년 월 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 단시간근로자(변호사)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예 : 변호사)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별지서식 제2호>

이 력 서

사 진 (jpg.파일)	성 명 (한글)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우)		
연 락 처	자택) 휴대전화) E-mail)			

	학교급 (학교명 작성 금지)	기 간	전공(학과)	구 분
학위	예)고등학교	예)20xx. x. x ~20xx. x. x		졸업, 재학, 수료, 중퇴
	예)대학교	예)20xx. x. x ~20xx. x. x		졸업, 재학, 수료, 중퇴
	예)대학원	예)20xx. x. x ~20xx. x. x		졸업, 재학, 수료, 중퇴
	교육법제 업무 관련성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 해당없으면 "해당없음"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경력		예)20xx. x. x ~20xx. x. x (0년 0월 0일)		구체적으로 기재
		예)20xx. x. x ~20xx. x. x (0년 0월 0일)		구체적으로 기재
		예)20xx. x. x ~20xx. x. x (0년 0월 0일)		구체적으로 기재

	표창(상훈)명 (표창(상훈) 대상자)	표창(상훈)내용	수여기관	수상 연월일
표창 상훈	표창장 (ㅇㅇㅇ)		ㅇㅇ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 경력・자격사항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행추가 또는 별지이용 가능

※ 경력・자격 등 기재 시 반드시 연월일을 기재

이 력 서 작 성 요 령

1. 이력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

2. 이력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 세부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주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② 학력은 보유 학력을 기재(학교명 절대 작성 금지)

- 재학기간은 '00.00.00~'00.00.00(년.월.일)형식으로 기재

③ 경력사항

- 근무기간은 '00.00.00~'00.00.00(년.월.일)형식으로 기재합니다. (반드시 일자까지 기재)

- 기재공간이 부족한 경우 칸을 추가하거나 별첨으로 작성 가능

- 관련 경력은 변호사(국내) 자격 취득 후 ①변호사로 등록·개업하고 소송대리, 법률자문 등 법률사무에 종사한 경력,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등록 공공기관 기준), 법인, 기업체 등에서 근무하며 법률사무에 종사한 경력만 인정

- 관련 실무 경력은 변호사등록증명원(상세현황 포함,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또는 경력증명서상 ①기관명, ②근무기간, ③담당업무, ④직위, ⑤근무시간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경력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직무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필요)

-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한 기간(6개월)은 관련 실무경력으로 인정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 단위로 합산하되,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하여 합산

  ※ 현 재직중인 근무기간 경력 산정 시 원서접수 마감일인 '25.3.14.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

- 증빙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회사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②폐업사실 증명서, ③소득금액증명서, ④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 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단시간 근로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④ 직무분야 상훈 실적은 관련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수여받은 상훈(개인 명의 상훈실적에 한해 인정)

⑤ 서명은 자필로 함

<별지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분야	단시간 근로자 (변호사)
생년월일	19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1. 자기소개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 간격 160mm, 글자색 : 검정색)

20 . . . 작 성 자 : (인)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성 명		응시분야	단시간 근로자 (변호사)
생년월일	19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시험공고문에 명시된 담당예정 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1. ① 본인이 해당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② 해당직무와 관련 있는 경력・실적
   ③ 채용예정분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계획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작성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 간격 160mm, 글자색 : 검정색)

20 . . . 작 성 자 : (인)

<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국가교육위원회는 단시간 근로자 선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관계 법령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번호 뒷자리는 비식별화(****표시, 블라인드) 조치하여 제출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 집 목 적	보 유 기 간
성명, 사진, 성별, 주소, 생년월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경력, 학력, 자격사항, 자기소개 등	근로자 채용심사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응시원서 접수 및 선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항 목	수 집 목 적	보 유 기 간
범죄경력정보 등	근로자 채용심사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응시원서 접수 및 선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20 년 월 일

❑ 지원자 본인

- 성 명 ..... (서명) .....
- 생년월일 .....
- 자택전화 .....
- 휴대전화 .....
- e-mail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본인에 대한 **후견등기사항** 및 **범죄경력** 자료를 직접 조회·열람하였으며, 조회 결과 **채용공고** 또는 「국가교육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에 위배되는 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향후,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채용 및 근로계약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_____(서명)

※ **(범죄경력 자료 조회·열람 방법)** 본인에 한하여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혹은 휴대폰 인증 후 확인 가능

※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확인 방법)**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https://egdrs.scourt.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친 후 무료 발급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